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비무장지대의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317”을 “31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6”을
“305”로 하며, 소방공무원 계 “3”을 “4”로 하고, 소방경 이하 “3”을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40”을 “1,035”로 하고, 일반직 계 “1,040”을 “1,03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33”을 “1,02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
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산립청의 명칭·위치(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지방산립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지방산립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지방산립청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지방산립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중부지방산립청	충청남도 공주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생략)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u> 9. ~ 34. (생략)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보호국) ①·② (생략)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21. (생략)	제11조(산림보호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u> 6. ~ 21.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317</u>		<u>31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6</u>		<u>305</u>	-1
	.		.		.	
소방공무원	계		<u>3</u>		<u>4</u>	+1
소방경	이하		<u>3</u>		<u>4</u>	+1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40</u>	<u>1,035</u>	-5
일반직 계	<u>1,040</u>	<u>1,035</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33</u>	<u>1,028</u>	-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